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시/장소	2024. 2. 22.(목), 14:00 /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사업명	동작구 상도동 188-19외 11필지 청년안심주택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동작구 상도동 188-19외 11필지		
의결번호	(구조)2024-2-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 분야>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의 고유주기 중 1차모드와 2차모드의 고유주기가 바뀌어 입력되어 있음. 확인하여 수정 요망. 추가로 3차모드의 질량참여율 방향은 Z대신 RZ로 표기 바람.
- 전이보 및 전이기둥은 연성상세가 충분히 구현되도록 시공시 유의하기 바람.
- 당 공사지 인근에 지하철이 지나가므로 “지하철 구조물 안정성 검토서” 에 따른 계층계획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 철저한 계층관리 실시로 안전시공이 되도록 유의하기 바람.
- 역타계산서 설계하중 내용 중 지하1층 중차량 시공하중을 고려한 사유와 적용 활하중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층 활하중 산정시 KDS 21 50 00 1.6.2항에 적합여부를 검토바람.
- MS19와 AS19 경계부 상세에서 전이층 상부근 상세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전단보강근 검토시 KDS 14 20 22 4.3.2 (1)항의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바람.
- Y1열 지하외벽과 기둥배근이 겹치는 구간의 배근상세를 제시바람.
- 전이기둥 중 단변이 600mm인 경우 필로티기둥에 의한 횡보강근 간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바람.
- 지하1~2층에서부터 시작되는 코아벽 지지에 대해 X4~6/Y2~3의 하중전이계획 제시 바람.
- 구조계산서의 P.125~126 기둥리스트에 TC7이 없음. 누락 기둥리스트 보완요망.
- 지붕 구조물의 설치에 따른 LSC1 주각부 정착 상세 제시 요망.
- 역타도면에 표기된 시공중 가설부재는 토압전달을 위한 부재로 보여짐. X6~7/Y3등 토압전달경로 재확인 및 가설계획 확인 제시 바람.
- 시공 편의성 및 구조 일체화를 위하여 수평부재와 해당층 하부 수직부재의 콘

- 크리트 강도는 동일하게 적용하기 바람.
- 합성보 설계시 모든 합성보에 대하여 Lb 값을 1m 로 적용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완공시가 아닌 콘크리트 타설전 시공단계에서의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해 합성보 설계시 Lb 값을 재검토 하기 바람.
 - 구조일반사항에 전이부재에 대한 내진상세를 추가하기 바람.
 - 23층 오픈라운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공용실 이므로 활하중 5.0kpa을 적용하여 재검토 하기 바람. 또한 택배차량, 쓰레기 수거차량의 통행이 있는 지하주차장 및 주차 램프의 경우 이를 고려한 활하중을 적용하기 바람.
 - 지하층이 깊고, 인접 건물이 지하외벽 가까이에 산재하여 있으므로, 인접건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하외벽을 재검토 하기 바람.
 - 전이 플레이트의 불균형 휨모멘트에 대한 검토 근거를 추가하기 바람.
 - 전이 플레이트의 전이 기둥에 대한 전단(편칭) 검토 근거를 추가하기 바람.
 - 전이플레이트 MG1~MG5, MS1~MS2 의 주근의 경우 설계근거상에는 철근강도 $f_y=600\text{Mpa}$ 을 적용하였는데 철근 간격제한과 피복두께 기준이 고려되었는지 재검토 하기 바람. 또한 전이플레이트 상의 MG1~MG5A 보 주근 및 전단철근 배근에 대한 설계근거를 추가하기 바람.
 - 지상층 기둥에 대하여 중연성도 이상의 상세를 적용하여 후프 간격을 재검토 하기 바람. (ex. C1, C2, C2A)
 - 기초 설계시 피복두께 50mm를 적용한 근거를 추가하기 바람.
 - 기초설계 근거에 따르면 철근의 항복강도를 $f_y=600\text{Mpa}$ 를 적용하여 설계하였는데, 주철근 간격제한과 피복두께 기준에 대하여 재검토 하기 바람.
 - 그라우팅 시험 시공계획(발표자료 p.113)에서 시험시공 위치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제시 바람.
 - 흙막이에 설치되는 각종 계측기의 설치 위치를 단면으로 제시하기 바람.
 - 조치계획에 언급한 대로 지하 공사에 따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계측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람
 - 코아벽 시작 구간에 대한 철골보 지지 시 간접상세 보완 요함
 - TCD 등과 같이 동일 기둥의 주근은 동일 직경 적용 요함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7항에 따라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행하기 바람. 끝.

2024. 2. 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